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75
----------	-------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 의 자 : 심상정 · 배진교 · 이은주
양정숙 · 류호정 · 강은미
강성희 · 장혜영 · 강민정
김두관 의원(10인)

제안이유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 신용 잔액은 1,86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5%에 이르렀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 역시 2022년 기준 206%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으며 최근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전체 가계 부채의 과반을 차지하는 변동금리 대출이용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취약 차주 부실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과도한 집값 상승과 이를 뒷받침하는 한국의 독특한 전세제도, 그리고 임대차시장의 금융화를 불러온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정책 등으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을 임차인 등에게 전이시키고 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약 8배 증가한 전세자금대출과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보증금은

갭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전세사기 대란을 불러왔음.

가계부채의 질적·양적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 성장률 하락, 인적자본 사장, 사회보장 비용 증가로 이어져서 가계는 물론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가져옴.

이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 상당수가 차주에게 상환의무가 있는 모든 대출을 포괄한 연간 원리금상환금액을 연 소득 대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듯이 우리도 무분별한 대출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출이용자의 보호와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할 시 이 법에 명시한 주요 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대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시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이나 대출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이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1. 금융회사는 대출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제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대출이용자의 소득과 재산,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 및 금융 대출채무액뿐만 아니라 임대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 등도 포함한 기준으로 변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함(안 제8조).

다-2. 대출이용자의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관리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정보와 국토교통부에 신고되는 주택임대차보증금정보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9조).

라. 대출이용자는 소득 감소, 금융시장 변화 등으로 변제능력이 악화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을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담보자산을 부풀리거나 상환 조건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대출

거래 분쟁 관련 강제 중재에 관한 사항을 설정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대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2조).

사. 금융회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아. 금융회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대출이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 및 제16조).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대출업무를 수행할 때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출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대출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대리점과 「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을 포함한다)

나.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 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
12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농협생명보험 또
는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 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카.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
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 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금융
상품판매업자
 - 하. 그 밖에 대출이용자를 거래상대방으로 금전의 대출(어음할인
·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영업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2. “대출이용자”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로서 금융회사의 대출에 관한 거래상대방을 말
한다.
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대출이용자의 연간 소득 대비 대출
이용자가 부담하는 총부채(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금융대출채무

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의 합을 말한다)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나타내는 비율로서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금융회사와 대출이용자 간의 대출에 관한 계약(이하 “대출계약”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대출이용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이용자의 재무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신용도 등을 고려한 철저한 여신심사를 통하여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출이용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대출계약서”라 한다)를 대출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 및 대출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6. 부대비용(수수료 등 원리금 상환액 외에 어떤 명목으로든 대출이

용자에게 부과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7. 부동산 등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절차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10.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계약에 따른 원금의 조기상환 조건
 11. 원리금 상환 연체 시 적용하는 이자율
 12. 그 밖에 대출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금융회사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제3자(이하 “보증인”이라 한다)에게 직접 설명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보증계약서”라 한다) 및 대출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금융회사·주채무자(대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대출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2. 계약일자
 3. 보증기간
 4. 피보증채무의 금액
 5. 보증의 범위
 6.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회사와 대출계약 또는 대출계약과 관련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채무 및 보증채무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해당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출계약의 변경과 고지의무)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그 상대방인 대출이용자 및 해당 보증인에게 변경된 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대출계약서 및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과잉대출계약 금지) ① 금융회사는 제8조의 변제능력 심사 결과에 따른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이하 “과잉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잉대출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변제능력 심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출인 경우. 다만, 다목의

요건은 대출기간이 2년 이상이고 대출계약일 이전에 다른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가. 정기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로서 원금잔액이 증가되지 아니하거나 대출이용자가 원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을 것

나. 대출기간 동안 원리금이 완전히 상각될 수 있을 것(이자율이 변동하는 대출은 변동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 최초 2년간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이용자의 대출계약일 이전 2년 이내 기간의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보다 2배 이상 많을 것

라. 제5조제1항제6호의 부대비용이 대출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출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변제능력 심사) ①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대출이용자로부터 그의 소득, 재산, 부채, 신용도, 변제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미리 제출받아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기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이용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사항
2. 타인에 대한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
3. 대출계약일 기준 종전에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에 따라 남은 채무액(이하 “금융대출채무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대출계약일 기준 대출이용자가 임대한 대출이용자 소유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시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이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금융회사에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에 관한 사항
6. 대출계약일 기준 종전에 금융회사와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채무가 상환된 경우 그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변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심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작성하였거나 보관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④ 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대출이용자가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거짓의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이 법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준수) ① 금융회사는 대출이용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대출이용자의 금융대출채무액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액에 대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액으로 나눈 수에 1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한다.

1.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이 관리하는 대출이용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관한 정보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되는 대출이용자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관한 정보
3. 대출이용자로부터 제출받은 대출이용자 소유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대출이용자의 소득 및 채무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10조(대출계약의 변경 등) ① 대출이용자는 소득의 감소, 금융시장의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제능력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대출계약의 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받은 시기의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분할상환의무 등)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 외에는 대출이용자가 대출계약에 따른 원리금 총액을 전체 대출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환개시(상환유예 후 재개시를 포함한다)의 요건이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사업으로 인한 이주비 대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제12조(불공정대출행위의 금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출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대출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만기일 이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위약금 또는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든 대가(이하 “중도상환수

수료”라 한다)를 부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출계약에 따라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

나.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2. 대출이용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 심사 시 담보자산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상환 조건 등 대출 관련 서류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4. 대출이용자의 신용도에 비추어 적절한 이자율보다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행위

5. 대출이용자의 확인 없이 초기에는 원리금 상환액이 낮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6. 대출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중재절차를 강제하는 내용으로 약정하는 행위

7. 그 밖에 대출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불공정대출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연대보증 요구의 금지) ① 금융회사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연대보증이 요구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회사는 연대보증인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도 등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연대보증채무액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차별 금지) ①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종교, 학력,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이자율, 상환 기한 등 대출 조건에 관하여 대출이용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회사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대출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출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출계약일부터 지급한 대출이자 상당액으로 추정한다.

제16조(대출채권 양도) 대출이용자는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금융회사에 제1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시정조치)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4. 경고
5. 주의
6. 그 밖에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8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제7조, 제9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해당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17조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벌칙) ①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제1항·제2항 또는 제6조를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2조를 위반하여 불공정대출행위를 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대출계약서를 교부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보증계약서를 교부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출이용자로부터 변제능력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자

④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